

노르웨이 신문평의회소개

I. 평의회 설립배경

노르웨이 신문평의회는 1928년에 설립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구성이 개편되었고 처리절차 등도 개정되었다. 그때마다 논의된 안건들에 의해 신문평의회 성격은 많이 변화되었다. 평의회 설립초기에는 어느 신문사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사들을 비난하는 불만호소가 대다수였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불만호소가 언론보도에 의해 권익을 침해 당한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1972년 6월 언론단체들의 철저한 준비과정과 장기간의 논의 끝에 대폭 개편되었다.

II. 평의회 구성 및 활동

1. 평의회 구성은 개편 전에는 신문사 대표 3인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신문사 대표 5인과 시민 대표 2인 등 7인으로 되었으며, 평의회위원들은 노르웨이신문협회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2. 개편 전에는 평의회 평결문이 「The Journalist」라는 신문편집인 협회보에만 게재되었지만, 개편 후에는 피 신청인의 신문에도 게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그 평결문을 전국 통신 주에 의해서도 발표되며, 게재하기 원하는 신문사는 그 평결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되었다. 평의회 임무의대상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평의회가 1970년대 초기에는 년 평균 약 60건의 불만호소사항을 처리했었으나 최근에는 연간 100건 가량으로 증가되었다. 평의회 임무처리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전에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1972년 재편 이후부터는 보고서를 작성, 간행하고 있다. 평의회는 또한 1936년 노르웨이 산개협회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재검토하여 시대적 조류에 맞게 수정했다. 수정된 윤리강령은 1975년 11월 12일 노르웨이 신문협회에 의해서 채택 되었다.

III. 신문평의회 정관

제 1 장 - 목적

노르웨이 신문평의회는 노르웨이 신문협회 (기자, 발행인, 편집인을 위한 신문단체)가 설립한다. 그 목적은 노르웨이 신문의 윤리 및 보도기준을 보호하며 개선하는 데 있다. 평의회는 활동의 일환으로 각 신문사에 대한 불만호소사건을 심의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평결문도 발표할 수 있다. 평의회는 언론보도에 대한개인의 불만호소 신청뿐만 아니라

단체의 불만호소신청도 심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평의회의 심의영역은 모든 정기간행물들, 즉 일간신문, 주간신문, 주간지 및 그 외의 정기간행물들을 다 포함한다.

제 2 장 - 지침일반 법률 외에 추가된 신문평의회를 위한 지침들은 다음에 근거를 둔다.

- 「신문명예 강령」 - 1936년 노르웨이 신문협회에 의해서 통과되었으며, 1966년 5월에 개정되었다.
- 「편집인 강령」 - 1953년 전국신문연합회와 편집인 협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 「사법절차보도를 위한 지침」 - 이 지침은 법무장관, 판사협회, 변호사협회 등의 동의로 1952년 신문협회에 의해 제정되었고, 1965년에 개정되었다.

제 3 장 - 구성 신문평의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5인은 신문사 대표로 하고, 2인은 신문사와 관계 없는 시민대표로 한다. 또 각 위원들은 대리인을 둔다. 평의회 의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들은 신문협회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임기는 임명된 해의 7월 1일로부터 2년간이다. 평의회에는 3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Working Committee)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그 구성원 3인중의 2인은 반드시 신문사 대표이어야 하며, 나머지 1인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제 4 장 - 불만호소요건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단체, 기구, 공공기관 등에도 부여된다. 또 평의회가 자체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심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 제소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만호소는 노르웨이 신문협회와 신문평의회에서 신청을 받는다.

제 5 장 - 불만호소처리절차신문평의회 업무는 신문협회의 사무국에 의해서 수행된다. 사무국은 불만호소 안건처리 준비를 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평의회가 제한기간 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사무국에 의해 검토된 안건은 먼저 불만호소 당사자들에게 통고한다. 불만호소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2주일 안에 평의회에 회답을 보내야 한다. 불만호소 당사자들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신청인은 2주의 여유를 두고 평의회에 대한 회신을 작성할 수 있다. 이 회신은 신청인에게 전달되며 신청인도 2주안에 답신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도 화해되지 않을 때는, 피신청인에게 최종답신을 작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때, 심의절차 초기에 당사자들끼리 대면해야 한다. 사건관계자료가 양측에 다 제시되었을 때, 신문평의회는 철저히 검토하여 평결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간결하게 결론 맺도록 해야 한다. 신문평의회가 자체적으로 제기한 심의 안건도 위와 똑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제 6 장 - 평결문 발표평의회가 작성한 평결문은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먼저 평결문은 불만호소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들이 내용을 인지한 후에는 자유롭게 공표될 수

있다. 신청인 매체가 일간신문이 아닐 경우는 평결문 발표가 발행 일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관계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도 평결문을 게재할 수 있지만 사건관계매체에만 평결문을 게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평결문을 발표하는 것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때, 평의회는 평결문 공표를 금할 수도 있다.

제 7 장 -발간업무평의회는 매 년 심의사례 집을 발행하며, 필요에 따라 언론관계 책자들도 발간할 수 있다.

제 8 장 - 재정평의회에 모든 경비는 신문주 들 간의 특별협약에 따라 신문협회에 의해 지원 받는다.

제 9 장 - 정관변경신문평의회 정관변경은 신문협회, 기자협회, 편집인협회, 전국신문연합회 혹은 평의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정관변경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신문협회의 집행위원회가 갖고 있으며, 이 집행위원회는 신문협회 정관변경에 대한 최종결정권도 갖고 있다.

제 10 장이 정관은 1972년 3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V. 신문윤리강령

1. 자유언론은 뉴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개토론 및 비판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문은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도할 권리와 그 상황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가할 권리가 있다. 신문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어느 누구로부터의 압력도 받을 수 없으며, 정보원에 대한 비밀보호와 공개토론이 보장된다. 신문은, 상반된 의견이 있을 경우 한쪽의 의견만 반영되지 않도록 골고루 보도할 의무가 있다. 신문은 공공기관, 기구, 단체, 사기업 등의 편에 서서 불의와 부주의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모든 신문, 모든 언론인은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스스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어떤 언론인도 자신의 확신과 반대되는 내용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2 언론자유 속에는 언론인과 신문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돼 있다.

- ① 정보원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수집된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최대한 철저히 점검할 것.
- ② 보도에 있어 사안보도와 논평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시킬 것.
- ③ 기자들은 자신의 확신을 남용하지 말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사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둘 것.
- ④ 책임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者の 진술을 취재, 보도할 경우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보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재할 때는 주의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판단력의 결여와 감상주의를 배격할 것.

- ⑤ 개인의 사생활, 인종, 국적, 신앙, 사상 등을 존중할 것. 현안문제와 관계없는 사적 사항에 대한공표를 삼갈 것.
 - ⑥ 기사의 제목이 본문내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 ⑦ 광고와 일반기사를 연관시키지 말 것. 광고주가 광고에 대한 댓 가로 PR 기사를 요구해도 거절할 것.
 - ⑧ 기자는 사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말고, 신문주의 언론활동에 이익이 되도록 이바지할 것.
3. 언론인은 정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정보제공자 자신의 특별한 동의가 없는 한 제공자의 본명이나 가명조차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단, 법정에서 정보원의 신원공개를 요구할 경우 해당 언론주와 언론인은 이에 대한 공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4. 오보가 이미 공표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인은 이를 인정하고 자책감을 느껴야 한다. 가능한 한 신속히 오보로 인한 피해자에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해 주어야 하며, 그 반론문도 적당한 크기와 형태 및 현안문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의 반론문이 게재 된 뒤에 신문사측에서 반론문과 관련된 논설이나 논평기사를 게재해서는 아니 된다.
5. 기사게재에 적용되는 보도기준이 사진게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진에 대한 물리적 변형을 삼가야 하며, 나쁜 이미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사진 보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사진이 본래의 상황과 다른 용도에 사용되어선 아니 된다.
6. 피의자 내지 피고의 유죄여부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판별될 수 없으므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보도는 민 · 형사상 재판보도에 있어 중요한 필수요건이 된다. 재판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정보들이 법정에 의해 사실적 자료로 채택될 때까지 보도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절차에 관한 보도에 있어, 중요한 공익에 준하지 않는 한 관계자들의 성명과 사진을 공표 할 수 없다. 피고의 전과사실이나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보도에 있어 초점화되어선 아니 된다. 범죄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보도로 인해 대중에게 노출되어선 아니 된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범죄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범죄피의자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게끔 어떤 형태로든지 불의가 행해져서도 아니 된다.
7. 자살이나 자살미수사건이 보도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주요규칙으로서 정해져야 한다.
- 법의: 본 신문윤리강령은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수반한다. 그러나 본 강령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신문윤리강령은 1936년 노르웨이 신문협회에 의해 처음으로 제정된 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V. 편집인의 권리 및 의무규정

편집인은 항상 언론의 이상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편집인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해 능력과 지식을 발휘하여 사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자신의 언론활동을 통해 언론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고 의사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도모할 수 있다. 편집인은, 사미보도와 논평보도의 차이점이 분명히 구별되는 저널리즘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편집인은, 자신의 신문에 대해 기본적 견해를 피력하며 기사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사전에 전개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체제 속에서 편집인은, 어느 특정문제에 대해서 발행인이나 이사진과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편집국내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신문의 두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편집인이 자주의 기본적 견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속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 사직할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편집인은 자신의 확신과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해 뜻을 굽혀서는 아니 된다. 편집인은 신문보도의 내용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편집인은 편집국직원들을 지휘하며 그들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발행인 및 이사진과 편집국직원들 사이에서 연계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편집인은 자신의 권한위임 권에 따라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문침착은 1인 이상의 편집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히 광고담당 편집인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노르웨이전국신문협회 (Norwegian Newspapers' National Association)와 노르웨이편집인협회 (Norwegian Editors' Association)가 공동으로 1953년 10월 22일 제정했으며, 1973년에 개정된 바 있다.>